

## MG주거래우대정기예금 특약안

제1조(적용범위) MG주거래우대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가입대상) 이 예금은 가입대상 제한이 없으며 새마을금고별 1인 1계좌로 합니다.

제3조(계약기간)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합니다.

제4조(최저 가입금액)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5조(회전주기) ① 이 예금에서 회전주기라 함은 계약기간 내에서 이율이 변동적용되는 단위를 말하며 12개월로 합니다.

② 예금 계약일 및 매 회전주기 개시일을 이율결정일로 하며,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율결정일은 변경되지 않고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.

제6조(이율적용) ① 이 예금의 이율은 계약일 및 매 회전주기 개시일에 새마을금고가 고시한 이 예금의 이율에 따라 변경 적용됩니다.

②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아래와 같이 회전주기별 실적에 따라 적용하며, 완성된 회전주기에만 적용됩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일 당시에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.

1. 이 예금 계약일 또는 회전주기 개시일 전월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 예금 개설 새마을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평잔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: 연 0.05%
2. 이 예금 계약일 또는 회전주기 개시일 현재 이 예금 개설 새마을금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그 대출잔액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합니다.
  - 가. 대출잔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: 연 0.05%
  - 나. 대출잔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: 연 0.1%
3. 실적산정기간(계약일 또는 회전주기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만기일 또는 회전주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 11개월을 말합니다)동안 이 예금 개설 새마을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료 자동이체 납부실적이 6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: 연 0.05%
4. 이 예금을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 : 연 0.1%

제7조(중도해지) 예금주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청구한 때는 회전주기가 완성된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을 적용하고, 완성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해서는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새마을금고에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제8조(이자지급) 이 예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여 회전주기 단위로 지급하며 찾아가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

않습니다.

제9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(제한사항) ① 이 예금은 계좌분할 할 수 없습니다.

② 이 예금은 공동명의 개설이 불가합니다.

③ 이 예금은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.

## 부 칙

이 특약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